#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(유기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19

발의연월일: 2020. 9. 10.

발 의 자:유기홍·서영교·김철민

민병덕 · 김수흥 · 박찬대

박완주 · 김진표 · 윤영덕

김병기 · 홍기원 · 윤준병

김종민 · 김민석 · 이탄희

황운하 • 홍성국 • 이병훈

정청래 • 권인숙 • 도종환

조승래 • 인재근 • 서동용

의원(24인)

## 제안이유

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그동안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, 그 사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 진전,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의 필요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.

반면,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5년 임기 내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적 정책을 추진으로 정책결정이 교육현장과 괴리되고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이 60%에 이르고 있고(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, '20.1.),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

폭증하고 있는데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,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'국가교육위원회'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·전 문성·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# 주요내용

- 가.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
 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・전문성
  ·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  (안 제1조).
- 나.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, 중장기 정책 방향,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(이하"위원 회"라 한다)를 둠(안 제2조).
- 다.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8명(상임위원 2명 포함),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(상임위원 1명 포함), 교육부차관, 교육감 협의체의대표자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,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2명, 시·도지사협의체 및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가 각

- 각 추천하는 2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 구성시 학생·청년, 학부모 대표자(대변자)가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,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(안 제3조).
- 라.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,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(안 제4조).
- 마.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(안 제5조).
- 바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, 「공직선 거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(예비후보자 포함)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,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 의원의 직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(안 제7조 및 제9조).
- 사. 위원회는 교육비전, 중장기 정책 방향,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의 수립에 관한 사항,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(안 제10조).
- 아.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

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(안 제11조).

- 자.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,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·분석 및 모니터 링을 할 수 있음(안 제12조)
- 차. 위원회는 국회, 대통령, 중앙행정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경우 교 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렵·조정할 수 있음(안 제13조)
- 카.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음(안 제14조)
- 타.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고,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위원회를 둠(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).
- 파.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, 위원회의 소관사

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(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).

##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#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

- 제2조(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)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, 중 장기 정책 방향,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(이 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.
- 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(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)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, 업무를 공정

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- 1. 교육 또는 그 밖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 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2.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 (상당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)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3. 교육·문화·언론·고용·산업·복지·과학기술 또는 그 밖에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4.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5. 학생, 청년, 학부모, 지역 주민 등으로 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
- 6. 그 밖에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국회가 추천하는 8명(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)
- 2.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(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)
- 3. 교육부차관
- 4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

의 대표자

-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
- 6. 「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」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, 「한국전문 대학교육협의회법」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하 는 2명
- 7.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·도지사 협의체 및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2명
- ④ 국회와 대통령은 학생, 청년, 학부모, 지역 주민, 교육 단체 등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위원을 추천·지명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 시 학생 또는 청년, 학부모를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⑥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⑦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「국가재정법」

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.

-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,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5조(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)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제6조(신분보장)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  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  - 1.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2.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3.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이 될 수 없다.
  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2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(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)로 등록한 사람
-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 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.
- 제8조(벌금형의 분리 선고)「형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 「국가공무 원법」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 합범(競合犯)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 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겸직금지 등)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.
  - 1.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
  - 2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
  -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.

##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

제10조(위원회의 소관 사무)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교육비전, 중장기 정책 방향,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국가교육과정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
  이하 같다)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등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 (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)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(이하"발전계획"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. 이하같다), 교육·연구기관 및 교육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  - ③ 위원회는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제2항에 따른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.
  -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-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수립 등)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 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·분석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,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·조정할 수 있다.
  - 1. 국회, 대통령,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
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.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·조정하기로 심의·의결한 경우
-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 의견 수렴·조정절차에 대한 진행여부를 요청기관 등에 알려야 하고, 국민의견 수렴·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심의·의결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고,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교육정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따라야 하며, 심의·의결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)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.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

- 제15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 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
- 제16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  -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특별위원회) ① 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

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다.

- ③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국민참여위원회)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.
  -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전문위원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 위을 둘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제20조(사무처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.
  -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  -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.
  - ④ 사무처의 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제29조 및 제32조, 「교육공무원법」제29조 및 제3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.
  -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

- 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교육연구센터의 지정)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 연구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2조(공무원 등의 파견)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한 사람에 대한 인사·처우 등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수당 등) 위원·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 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하다.
- 제24조(운영규칙의 제정)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위원회의 위원·직원의 임명, 이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·공포 등 위원회의 설립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
- 제3조(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.
- 제4조(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10조제1항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.
  - ②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행한 고시·행정처분, 그 밖에 교육부장관의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한 신청·신고, 그 밖에 행위 중그 소관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.
  - ③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  - 제12조의4제3항 중 "교육부장관에게"를 "국가교육위원회에"로 한다.
  - 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
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가목 중 "교육부장관이"를 "국가교육위원회가"로 한다.

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교육부장관은"을 "교육부장 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"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교육부장관은"을 "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"으로 한다.

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과"를 "국가교육위원회와"로 한다.

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 중 "장과"를 "장(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)과"로, "교육부장관이"를 "국가교육위원회가"로 한다.

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에게"를 "국가교육위원회에"로 한다.

⑦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의 "교육부장관이"를 "국가교육위원회가"로 한다.

⑧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"교육부장관은"을 "국가교육위원회는"으로, "교육부

장관이"를 "국가교육위원회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교육부장 관과"를 "국가교육위원회와"로 한다.

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각각 "국가교육위원회"로 한다.

① 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은"을 "국가교육위원회는"으로, "교육부장관이"를 "국가교육위원회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- 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및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교육과정 및 방과후"를 각각 "방과후"로 한다.

-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,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교육부령으로"를 "국가교육위원회가"로 한다.

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 중 "교육부"를 "국가교육위원회, 교육부"로 한다.